

의안번호	2200908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8.19.
추계번호	24B12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의2.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이란 쓰레기 또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불문하고 풍선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유입·투기되는 것으로서 공중 비산에 따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함	의무 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폐기물에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개념을 추가하고 있어, 동법 제4조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게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전국의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의 발생량, 수거량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고, 동 폐기물의 처리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용, 재정지원의 방법과 내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경기도 과주시, 강원도 철원군 등은 현재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해당 물질의 양을 별도 계상하지 않고, 군부대 사업장폐기물 처리 또는 지자체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 처리하고 있음
 - 다만, 접경지역 생활폐기물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관련 환경부 주요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산 (백만원)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여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2,160
업사이클센터 기업지원사업	서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건립사업 지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250
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시범사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설비 구축 및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시범사업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조	1,500

자료: 환경부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접경지역 주요 지자체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톤/연)

구분	경기도				강원도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022년	13,612	144,979	147,682	18,271	12,956	9,296	23,450	17,424
2021년	13,136	142,055	153,049	21,094	14,006	9,182	22,576	17,157
2020년	12,868	203,557	105,068	19,476	15,719	11,738	12,540	11,818
2019년	9,855	147,387	123,553	17,228	20,842	11,060	16,535	13,542
2018년	18,652	149,650	99,682	18,980	16,389	11,425	27,923	4,928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보고서(연간)